

<성명>

한국정부의 재단 채무 인수책은 피해자의 존엄성 회복이 될 수 없다!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진상규명과 포괄적인 해결을 진행하라!

2023년 3월7일

강제동원 진상규명네트워크

공동 대표 안자코 유카 히다 유이치

2023년 3월6일 한국 정부는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이 원고에 대한 채무 (배상)을 인수한다는 해결책(제3자 변제)를 공식발표하였다.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구상권은 상정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 발표에 호응하는 형태로 일본 정부는 종전의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피고 기업에 의한 재단에 대한 참여표명은 없었다. 대신에 한일 경제단체가 유학생 지원과 청년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미래지향”기금을 설립한다고 한다. 일본 정부가 대법원 판결에 대항하는 의미로 실시한 반도체 재료 수출 규제 등도 해제될 전망이다.

강제동원에 관한 2018년 한국대법원 판결은 전시 일본 기업에 의한 강제동원을 반 인도적불법행위로 하고 동원 피해자의 강제동원위자료청구권을 인정했는데 이번에 채무 인수책은 한국 사법에서 확정된 위자료청구권을 한국정부가 개입해서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해당 기업의 사죄와 배상이 없는 채로 처리하는 것으로 돈의 지불만 고집하면서 피해자의 존엄성 회복과 식민지주의 국복이라는 시각은 볼 수 없다. 게다가 일본 정부가 강제노동을 시켰다고 인지하지 않고 일본 정부가 식민 통치와 징용을 합법으로 삼는 입장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며 식민지 지배와 그 상황에서 있었던 강제노동이라는 과거를 청산하는 것이 될 수 없다. 그것은 피해자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침해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결코 강제동원문제의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한국 정부의 채무 인수책은 일본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국제법위반으로 보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고 하고 강제노동을 인정하지 않고 판결을 부정하는 입장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청구권협정의 체결 후에도 재한 원폭피해자, 사할린 잔류 한국인, 일본군"위안부" 등의 문제에 대하여 계속 대응해 왔다. 강제 동원 문제 역시 미해결 문제이고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피해자 존엄성의 회복을 위해 대응하면 된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강제노동의 역사에 부정적인 입장이며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다. 바로 문제는 거기에 있다.

2005년 말 국제연합 총회에서 “중대한 국제 인권법, 국제인도법 위반의 피해자 구제와 배상에 관한 권리 기본 원칙”을 채택하였다. 그 채택 내용에는 중대한 인권 침해의 피해자는 진실,정의 ,배상,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의 권리로서 지속적인 침해의 중단, 진실의 공개, 실종 피해자의 소재 파악, 시신의 조사와 발굴, 피해자의 문화적인 관습에 따르는 장례, 피해자의 존엄성과 권리 회복을 위한 공적 선언과 사법의 판결, 사실 인정과 책임 있는 공적인 사죄, 책임자 처벌, 피해자에 대한 기도와 추도, 각종 교육의 장에서 정확하게 기재할 것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국제 원칙에 따라 식민지 지배와 강제 동원의 역사적인 책임을 진다는 입장에서 강제동원피해자의 존엄성 회복을 위해 행동해야만 한다. 그 다음에 일본 정부와 기업은 강제 동원의 사실을 인식하고 사죄와 배상의 자세를 보여 주어야 한다. 또한 관계 기업은 동원피해자의 존엄성 회복을 위해 피해자와 협의하는 기회를 가지고 한일 양국 정부는 그 자리를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원고의 피해 구제와는 별도로 한일 정부와 한일 관계기업은 강제동원피해의 포괄적인 해결을 위해 협의체를 설치하여 구제기금설치 등을 협의해야만 한다.

우리는 일본정부가 강제 동원을 인정하고 그 진상규명과 포괄적인 해결을 계기로 진정한 한일 우호를 실현하는 것을 요구한다.

(연락처)

고베시 나다구 야하타초 4-9-22 고베학생청년센터 댁내

강제동원진상규명 네트워크